

우수제품등 [] 지정
[] 지정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체명		기업 유형 개인 [], 법인 []	
	대표자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
				공장
	주소	본사		
		공장		

우수제품등 개요	우수제품등 명칭		
	우수제품등의 내용		
	우수제품등의 지정 필요성		
	붙임 서류 내용 요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등 ([] 지정, []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지정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